

# 차량기지 특수경비용역 과업지시서

## 1. 목 적

본 과업은 부산-김해경전철(주)(이하 “발주자” 라 한다) 차량기지 및 종합관리동의 경비 및 방호를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차량 기지 내 안전 및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용역의 기간

용역의 기간은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 3. 경비원 배치현황 및 근무시간

- 1) 경비원 총 근무인원은 7명으로 한다.
- 2) 경비원의 배치 및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이한다.

구분	인원	근무지	근무형태	근무시간	비 고
경비대장	1	정문 및 종합관리동	통상근무 (10시간)	07:30~17:30	주5일
정문 경비원	6	정문	12시간	19:00~07:00 07:00~19:00	3조2교대

- 3) 정문 경비원은 각 2명씩 12시간 교대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4) 정문 경비원은 야간 근무시 교대로 순찰을 실시한다.
- 5) 경비대장은 차량기지 순찰시 종합관리동 업무 지원을 실시한다.(택배 및 우편수령 및 전달)
- 6) 통상근무자는 1시간, 교대근무자는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7) 휴게시간
  - 가. 주간 : 통상근무자(1인)+교대근무자(2인)이 순환근무하면서 30분씩 휴무
  - 나. 야간 : 교대근무자(2인)이 00:00~03:00 / 03:00~06:00 교대로 휴무
- 8) 경비원 교육
  - 가. 경비업법 제 13조에서 정한 월 6시간 법정 직무교육 의무적 실시  
: 경찰청 승인 교육기관(미소능력개발센터)인터넷 직무교육 실시
  - 나. 철도안전법 제24조에서 정한 철도종사자안전교육 매분기 6시간 이상

다. 산업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교육을 매분기 6시간 이상

#### 4. 경비원 배치조건 및 과업내용

##### 1) 배치조건

연중무휴로 근무시간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

##### 2) 과업내용

가. 경비 대상물

구 분	소 재 지	대지 (m <sup>2</sup> )	펜스 (m)	비 고
차량 기지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	76,450	둘레:1.5KM 높이 : 2.7m	부대시설 일 체

##### 나. 경비범위

- (1) 대지, 시설물에 대한 침해행위나 파괴행위의 예방 및 시설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 저지
- (2) 차량기지 내 출입구에서의 차량, 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통제
- (3) 각종 부대시설, 재산의 도난, 파괴행위 등의 방지
- (4) 화재, 재난, 비상사태 등 발생 시 수습 및 인명, 재산의 구조와 대피
- (5)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등

#### 5. 경비원의 배치 및 자격

- 1) 경비원은 정문에 배치한다.
- 2) 경비원의 자격은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하되, 신체 건강한 자로 한다.

#### 6. 경비업무

- 1) 경비근무자는 정문 경비실에 게시된 근무수칙에 의거 경비에 임하며, 계약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경비근무자 준수 요구사항 별첨 참조)  
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경비근무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근무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순찰시 순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경비근무자에 대한 복무사항을 지시 감독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긴급한 사항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지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행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순찰코스

- ① 검수고 후문 일대
  - ② 검수고 정문 일대
  - ③ 종합관리동 내/외부 시건상태 및 소등
  - ④ 폐수처리장(차량기지 외곽펜스 확인)
  - ⑤ 자재창고 일대(차량기지 외곽펜스 확인)
  - ⑥ 정문경비실
- ※ 경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계약자 이행사항

- 1) 경비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경비대장을 둔다
- 2) 경비대장은 매일 2회 이상 주간순찰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관리·감독하고, 근무자로부터 근무일지를 받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유무 보고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3) 경비대장은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경비대장은 주 1회 이상 전체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경비용역 계약사항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세부 근무요령에 대하여는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 6) 근무자에게 경비업무의 구체적 수행내용을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토록 하여야 한다.
- 7) 계약에 의한 용역개시 이전에 경비근무자를 배치 완료하여야 하고, 발주자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마쳐야 한다.
- 8) 근로자의 개별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그 중 이력서 1부(부분)를 계약개시 3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경비용역 근무자 채용 전 반드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10) 경비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 검사 이행

계약상대자는 매월 경비용역계약 이행사항을 발주자 검사를 받은 후 월별 경비용역 대금청구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 9. 기타사항

-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건물 내 주요물품 및 시설물현황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인계의 불철저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진다.
- 2) 경비근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 3) 경비업무에 필요한 전화는 구내전화를 사용한다.
- 4)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5) 용역 착수시 계약서 제출 외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경비계획서
  - 나. 순찰계획서
  - 다. 연간 교육계획서
  - 라. 경비실(초소)별 근무자 명단
  - 마. 개인 장구 지급현황
  - 바. 경비원 명부, 경비원교육이수증
  - 사. 법인 등록증, 경비업무 허가증
  - 아. 비밀취급 인가증
  - 자. 기타 인계인수 사항.
  - 차. 투입되는 경비원의 특수경비 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증 제출
- 6)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항, 7항에 따른 용역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주의조치하며, 3회의 주의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경고조치하고, 계약금액을 감액조치 할 수 있다.”

첨부 : 경비근무자 준수 요구사항 1부. 끝.

# 경비근무자 준수 요구사항

경비근무자는 차량기지 내의 시설 및 인원 등 차량기지 내의 모든 재산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항상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근무지 내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근무 중 건물내부 및 외곽에 대한 보안 유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항상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1) 근무자는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근무 자세를 확립한다.
- 2) 근무교대 시는 건물 내의 사무실, 차량기지 및 기타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 3) 기지 내 주간순찰은 매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야간순찰은 3시간마다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4) 잠상인 등 외부출입을 통제하고, 특히 업무시간 후에는 출입자의 신분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출입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재 입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5) 물품의 반출은 관련부서의 반출승인여부(반출증 등)를 확인한 후 허가한다.
- 6) 건물의 도난, 화재,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책을 해당기관에 요구(근무일지에 기록 등)하여야 한다.
- 7) 건물 내의 각종 비품이 있는 사무실 및 OCC에 대해서는 도난에 대비하여 항상 경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 8) 각종 사고발생 시 현장보존 및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한다.
- 9) 교대근무시간을 엄수하고, 근무 중 음주, 도박, 바둑(장기) 및 취침을 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10) 기타 회사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